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2월 1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공무직 전환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신설)
 - 공무직의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 신설)
 - 공무직의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 신설)
 - 공무직의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직 근로자로의 전환 채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
- 공무원직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 시 공무원직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며 기존 단체협약과 상치하는 부분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